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4.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마 전 동



-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
- 2.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식 CCTV의 위치를 변경하여 이전 설치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이전 설치 장소

현재 장소	이전 설치 예정 장소
1. 완정로 64번길 48(창대아크로빌 앞)과 완정로 64번길 44(동신건강원 앞)사이 2. 완정로7번길 20 인근	1. 완정로 64번길 36부터 완정로 64번길 48일대, 완정로 30부터 완정로 34번길 6일대 2. 완정로 45번길 21 일대

※ 촬영 범위 등 현장 여건 및 무단투기 정도에 따라 이동설치 될 수 있음

5. 행정예고(공고)기간 및 방법 :

○ 2026. 8. 4. ~ 2026. 8. 25. (21일간)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홈페이지

(<https://www.geomdan.go.kr/main/community/news/gosi.jsp>)

○ 마전동 홈페이지(https://www.geomdan.go.kr/dong/majeon/sub/dong_notice.jsp)

6.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로부터 다방향 50M이내

(모션 감지 시 촬영 및 녹화 운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붙임 “의견제출서” 활용)를 작성하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 및 FAX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6. 8. 25.까지(21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방문, 우편 : 인천 검단구 원당대로 623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 팩스 : FAX 032-718-5499

라. 문의 및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032-718-5468)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